

수신 : 경기도 광주시 감사실

발신(민원인) : [REDACTED]

제목 : '쿠팡 곤지암 1센터' 복도폭 재조사(20025-00005) 요청

1.

상기 센터의 1층 복도 유효폭이 1.0m 밖에 되지 않아
재난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즉각적인 조사와 대응을 귀 시에 요청(2025.4.1.)하였습니다.

특히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 소방점검 과정 중 해당 센터의
불법 사항이 오랜 기간 확인 안된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2.

이에 귀 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2025.5.1.)

지상 1층 내 복도 유효폭 미확보 사항 조치 요청 관련, 해당 건축물은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2020. 4.에 적법하게
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공간은 화장실, 전기실,
락커룸 등으로 이용 중이며 이는 「건축법」 제2조(정의) 제6항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조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어 관련 규정 상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하지만 이에 대해

2025.12.31 쿠팡연석청문회 자리에서 불법성 지적

2026. 1. 2 해당 센터는 자체 공사 시작(불법 사실 인정)

2026.1.7.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현장점검 실시

이후 동일 건에 대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자의 출장결과 보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열미리 416-3번지 현장조사 결과, 적층식랙(지하1,지상2,3층) 설치 확인, 지상1층 복도 너비 미확보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사전통지)예정.

민원인은 이토록 어이없는 행정을 귀 시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도 유효폭 : 합법 → 불법

적층식 랙 : 불법 → 합법 → ?(결과가 기대됩니다)

4.

민원인은 귀 시의 부실한 행정에 대해 분명한 조사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귀 시의 1차 회신(2025.5.1.)에 보면 해당 센터는 2020. 4 적법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 인허가/사용승인/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에

1층 복도 유효폭이 1.2m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십시오.

이게 확인되어야 건축주(사용자)/설계사/시공사/감리사/인허가기관 중 누가 불법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귀 시의 1차 회신이 맞다면

사용 승인 이후 건축주(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이 또한 그 시기와 방법이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귀 시의 1차 답변부터가 잘못됐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 3) 2025년 현장 조사시 이 문제를 합법으로 판단한 배경과
2026년 전혀 다른 판단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센터의 조건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쿠팡의 대관능력(?)에 의한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4) 해당 센터가 본 불법 사항을 자발적으로 해소했다면
그 동안 벌인 불법적 행위와 사실이 사라집니까?
센터에도 민원인이 알렸지만 그 동안 자발적 시정은 없었습니다.
- 5) 반드시 관련된 정확한 조사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